

상주시 공고 제 2022 - 1490 호

「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8일

상 주 시



「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2022. 4. 21. 시행)된 규정을 반영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개정사항(22. 4. 21. 시행) 반영

- 행정재산을 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“사용·수익허가”의 용어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모두 “사용허가”로 함

나.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재산관리관의 업무구분을 명확하게 규정

- 조문 간 분산 되어 있는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함(안 제2조)

다. 그밖에 불부합 및 불명확·불합리한 규정 정비

-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할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상향함에 따라 정비함(안 제13조)
- 행정재산 매수 절차에 있어 공유재산 관련 법령 외에 다른 법령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법에 따르도록 규정함(안 제15조제2항)
- 교환에 필요한 서류 등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정비함(안 제26조제1항)
- 조례 상 용어로 정비함[채광물→“토석”(안 제33조)]
- 변상금에 대한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36조)
-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

라. 별지 서식 정비

-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서식 제목 및 용어를 수정하고 내용을 알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함
- 공유(지식)재산 사용허가·대부계약 시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특약 사항 조항을 추가함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8일까지 상주시장(참조: 회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nna1109@korea.kr

2) 일반우편: (우37211) 상주시 상산로 223, 상주시청 회계과

3) 팩 스: 054-537-6125

라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회계과(전화: 054-537-728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규칙명: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성명(단체명):

주 소:

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	의 견	비 고